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22 선고 2021가단6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2021. 10.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E에게 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10. 20. 접수 제21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지법원 2015차88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8,974,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 8.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 E이 있으며, E의 상속지분은 1/3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0. 19.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이 1/2 지분씩의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지법원 2021. 10. 20. 접수 제21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마.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E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들에게 각 1/6 지분씩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E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10. 20. 접수 제21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중

별 지 목 록 부 동 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남 여수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전남 여수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51.7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 8850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8850 분의 34.92

